

	<h2 style="margin: 0;">교수회규정</h2>	규정번호	3-8-6
		제정일자	2005.06.08.
		개정일자	2025.10.01.
		개정차수	8차
		소관부서	교무처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학칙 제9조에 의하여 안산대학교 교수회 (이하 “교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교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칙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2. 교수와 연구에 관한 주요 사항
3. 학생의 졸업에 관한 사항. 다만, 후기졸업에 관한 사항은 학과장회의에서 심의한다.
4. 학생의 지도와 상벌에 관한 주요 사항
5. 학사 및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6. 교수회 운영에 필요한 교수회 규정 및 총장후보 추천 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7.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교수회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이하“교수”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다만, 교육중점교원, 강의전담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 외국인교원은 제외한다.

② 위 제1항의 예외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학부(과)장인 경우에는 학과와 관련된 사안을 심의할 때 교수회에 참석할 수 있다.

③ 교수회의 의장은 총장이 되며, 부의장은 교무처장이 된다.

④ 서기는 호선에 의해 선출하며 교수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제반 서무를 처리한다.

제4조(의원의 임기) ① 당연직의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서기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5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교수회를 대표하며, 교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교수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교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20일 이내에 이를 소집한다.

② 의장은 회의 개최 5일 전에 일시, 장소, 안건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③ 교수회는 재적 교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교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의장이 거부할 경우, 재적교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교수 3분의 2 이상으로 재의결한다.

제7조(총장 후보 추천) 교수회는 총장 임기만료 60일 이전에 법인 이사회에 총장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총장후보의 추천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후보추천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자료제출요구) 의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학내 관련 부서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부 칙

이 규정은 2005 년 6 월 8 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08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 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 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 년 10 월 1 일부터 시행한다.